

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

(농림부)



농림부는 최근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. 특히 올해는 양계발전 종합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첫 번째 농림사업으로 계육업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이에따라 본지는 2002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육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발췌,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. <편집자주>

<p>31.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</p> <p>○ 사업분류</p> <p>○ 지원대상품목</p> <p>○ 지원내용</p> <p>○ 지원기준</p>	<p>○ 농축산물판매촉진</p> <p>○ 김치, 신선채소, 인삼, 과일, 화훼, 전통장류, 축산물</p> <p>○ 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의 일부를 수출물류비로 지원</p> <p>(신설)</p>	<p>○ 농축산물판매촉진</p> <p>○ 김치, 신선채소, 인삼, 과일, 화훼, 축산물</p> <p>○ 수출에 필요한 포장, 선별, 운송비 등 물류 비용과 해당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조성사업 지원 - 수출조성사업은 예산액의 4% 범위내에서 지원가능</p> <p>○ 원예부류 : 국가별 표준물류비의 30%지원 - 신시장/신상품 개척, 수출단지육성, 품목특성고려 등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표준물류비의 5%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</p> <p>○ 축산물 : 포장상자 제작비의 40% 범위내 지원(단, 신규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장</p>	<p>○ 국산원료 미사용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</p> <p>○ 수출판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부대업무처리비용 최소화 인정(현지검역, 배 봉지구입, 교육비용 등)</p> <p>○ 품목별 통일된 지원단가 마련</p> <p>○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</p> <p>○ 축산물 중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촉진</p>
--	--	---	---

구분	현행(2001)	변경안(2002)	변경사유
33.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 □ 지원대상 □ 대출 최저한도	○ 농업법인중 출자금 1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수출자금 지 원불가 등 지원조건 규정(농림 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3) ○ 최저 적재물량 및 금액기준 설정 -1컨테이너 해당액으로 하되, 50백만원 이상	재비 및 운송비등 지원 검토) ○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 항 명시('02 농림사업시행지침서) ○ 최저한도 단일화 : 품목당 50백 만원	○ 일반업체와 형평성 결여 ○ 수출 촉진 및 확대 취지에 부적합 ○ 컨테이너 기준 적용은 품목 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-고가인 인삼, 밤, 송이 등과 배 추 등 채소류를 동일한 물량기준 으로 적용 곤란
34. 축산물품질 향상 I. 원료돈 구매 자금지원	(신규)	- 사업대상자 : 양돈농가 등과 계통 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 • 자금회전율이 8회전이상 업체 - 사업물량 및 금액 : 315천두(392 억원) - 지원조건 : 연리5%, 1년거치 일 시상환	신규사업
II. 육가공업체 시설지원	(신규)	-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돼지고기생산을 위한 가공·저장시 설, 운송·장비등 시설현대화를 기 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 설증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자 - 사업물량 및 금액 : 22개소, 28,500백만원(용자19,950, 자담 8,550) • 시설신축 및 증축(13개소) : 개 소당 1,500백만원(용자1,050, 자담 450) • 시설개보수(9개소) : 개소당 1,000백만원(용자700, 자담300) - 지원조건 : 연리5%, 5년거치10 년균분상환	
III. 규격돼지, 닭 출하촉진자금 <돼지> ○ 사업대상자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		- 2002.1~12월기간중 동일 수출 업체에 반기(6개월)동안 400두이 상 규격돈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 별농가 및 계열화업체 중 신청자 - 200억원 - 연리5%, 1년후 상환	

구분	내 용	내 용 (2002)	내 용 (비고)	
	<닭> ○ 사업대상자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 35. 축산물유통 개선지원사업 I. 도축 도매시설 1)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2) 축산위생시설 (도축장HACCP) 및 컨설팅 지원 3) 축산물분류표준화사업 II. 가공판매시설 1) 계란집하장설치 및 계란등급신설지원 ○ 사업대상자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 2) 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 ○ 사업대상자 ○ 사업비 ○ 지원조건 3) 식육소매유통시설 ○ 지원액	- 기존도축장 3개소 이상 통폐합 - 컨설팅 지원비율 보조 70%, 자담 30% (신규) (신규) (신규)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 -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: 140~1,050백만원 - 식육판매모범업소 : 14백만원	-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는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 - 50억원 - 연리5%, 1년후 상환 - 기존도축장 2~3개소 이상 통폐합 - 보조50%, 자담50% - 축산물부분육가공장에 대한 포장자재비 등 지원 - 계란집하장 : 대규모 산관계농가, 양계축협 등 생산자단체 - 계란등급시설 :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- 10,150백만원 - 시설 : 연리5%, 5년거치 10년상환 - 운영 : 연리5%, 1년후 상환 - 사업대상자 : 육계계열화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 닭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- 3,500백만원 - 연리5%, 5년거치 10년상환 - 식육소매유통시설로 통합 - 시설개선 : 35백만원 - 시설설치 : 140~1,050 백만원	- 대상자 요건완화로 실효성을 높임 - 보조지원비율 축소 - 부분육상장표준규격 제정고시('01.3.15)에 따른 사업활성화 - WTO패널결과에 따라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 종료

구분	현행(2001)	변경안(2002)	변경사유
7) 닭고기체인점 설치지원	(신규)	- 용자70%, 자담30 - 개소당 975백만원	
8) 돈가스 외식프랜차이즈 설치사업 ○ 지원대상	- 농협, 도드람유통	- 연리5%, 3년거치 5년상환 - 생산자단체 및 돈가스가공시설을 갖춘자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중 안. 등심을 이용하여 돈가스를 가공하여 판매코자 하는 자	- 지원대상자 확대
9) 축산물종합처리장.공판장 및 도매시장운영 활성화 사업 ○ 지원대상 ○ 지원조건	- LPC, 도매시장.공판장 - 년리5~8%, 1년후 상환	- LPC, 오리도축.가공장, 도매시장.공판장 - 년리5~5.5%, 1년후 상환	- 2001년도 신규사업지원대상(오리도축.가공장) 확대
10) 오리.말 도축.가공시설 설치사업 ○ 지원대상	- 오리도축.가공시설	- 오리도축장 및 말고기 가공장	
Ⅲ. 축산물등급판정	- 등급거래지역(고시지역)의 확대 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의 무지역 확대	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정착 -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- 닭고기등급제 사전준비	
40. 농업종합자금지원 1. 목적	○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○ '01년에는 농.축산경영자 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과 연계 운용 - 재원조달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	○ 농업종합자금지원 (삭제)	○ 사업명칭 변경 - 유사명칭이 많아 표절 우려 ○ 자금제도 폐지로 자금구분 설명 필요없음.
5. 사업시행 요령 가. 사업내용 1) 지원대상자	○ 원예특작.축산분야 재배.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	○ 원예특작.축산분야 재배.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또는 선진작목반(공동이용시설에 한함)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	○ 대상자에 선진 작목반(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의 경우) 추가 -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개별대출로 전환 바람직

구분	현행(2001)	변경안(2002)	변경사유
2) 지원조건 ○ 자금용도	영체 ○ 농기업경영자금,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 운용에 따른 지원대상(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) - 쌀분야 :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 원예특작.축산분야 유통.가공.저장사업 :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)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증인 농업인, 농업법인 기타 일반사업자 - 경주마사육 축산농가 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 ※ 영농규모, 연령,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 (신설) • 운영자금 2년내 상환 (신설) ※ 토지매입자금 용도제한 - 지목상 '답'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	영체 ○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, 정책자금(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) 기지원 유통가공시설 보유사업자, 경주마사육 축산농가,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 -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(삭제) ※ 지원제의 자격요건 - 해당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- 임대.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-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-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인, 유통가공업자, 금융기관 총부채가 3억원이상인 개인 - 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 -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 등록(제재)중인 경우 - 수산업, 임업(표고버섯 포함)종사자 • 운영자금 2년내 상환(단,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~5년 일시상환) ※ 기존시설물 및 기초성 과수원 구입지원 불가 ※ 토지매입자금 용도제한 - (삭제)	○ 농기업경영 및 축산전업경영자금 '02년에 폐지 ○ 불필요한 문구 삭제 ○ 실제영농종사자 지원기회 확대 ○ 운영자금은 계열화주관업체에서 부담하므로 운영자금 지원시 이중지원초래 ○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요건 충족 ○ 부실징후자 지원 제한 ○ 농기업경영자금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표고버섯은 산림청지원과 중복 ○ 인삼식재자금 구분변경 반영 ○ 자금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물 구입지원을 제한 ○ 규제철폐를 반영

	현행(2001)	변경안(2002)	변경사유
○ 운영자금	- < 신설 > -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	- 노지 300평미만, 시설부지 100평미만 및 매입단위가 전업농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-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『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(구매)소요액은 지원제외』	○ 투기적매입방지 및 단계적 사업확장을 유도(매입상한설정) 및 소규모매입 방지 ○ 매취 및 수입액 지원제한 필요
○ 지원한도	○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이상(상한액 없음)	○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. 단, 금차투자사업이 전업농규모(법인의 경우 구성임원수 만큼 승하여 적용)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사업비 및 당해 운영자금은 지원제외	○ 순차적 안정적 투자유도를 위해 투자규모 상한을 설정
나.사업추진체계	※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 사무소에는 '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'라는 표지를 부착	(삭제)	○ 실효성 측면에서 관련내용 삭제
3) 취급자금	○ 농업경영종합자금,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 ※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에는 시.군의견조회를 하지 않음. 단, 인허가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	(삭제)	○ 취급자금 구분 불필요 문구삭제
3) 심사방법	(신설) 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매반기별로 여신검사(loan-review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※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	※ 운영자금이나 개보수 자금신청의 경우는 시.군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 <이하 삭제> ○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매반기별로 점검하고 해당결과를 농협내 감사지도부서 및 농림부에 보고 ※ 시설원예분야 시설 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지침에 따름. 다만 700평이하 파이프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	○ 기존 시설개보수의 경우 공부상 면적증가 없는 단순시설교체 등으로 의견조회 생략 필요 ○ 대출업무 취급의 적정성 지도라는 당초 도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실태점검으로 대체바람직 ○ 자동화온실1-2W-L형까지는 농업인의 자율시공을 허용하고 고액투자 온실은 적용
아.사후관리 및 행정사항	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매반기별로 여신검사(loan-review)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※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	○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○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매반기별로 점검하고 해당결과를 농협내 감사지도부서 및 농림부에 보고 ※ 시설원예분야 시설 설계, 시공업체 선정,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지침에 따름. 다만 700평이하 파이프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	○ 대출업무 취급의 적정성 지도라는 당초 도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실태점검으로 대체바람직 ○ 자동화온실1-2W-L형까지는 농업인의 자율시공을 허용하고 고액투자 온실은 적용
< 축산 분야 > 가.지원대상사업	○ 양돈, 양계(육계,산란계 포함)	○ 양돈, 양계(육계,산란계 포함)	

구분	연령(2001)	연령(2002)	비고
<p>○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(경종농업분야)</p> <p>○ 평가기준 (신규후계농업인)</p>	<p>함)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지원을 제한(다만,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시까지로 함)하되,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(재건축 포함)은 지원 - 개보수.운영자금은 계속 지원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○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,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(신설)</p>	<p>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지원을 제한(다만,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시까지로 함) - 개보수.운영자금은 계속 지원 - 단, 아래의 경우에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</p> <p>①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(재건축 포함)</p> <p>② 남은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가 양돈시설을 설치할 경우</p> <p>③ 기존 종계장, 부화장중에서 규모화를 위해 전업종계장(사육규모 2만수이상), 전업부화장(주당 20만수이상) 규모로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</p> <p>④ 기존 양계농가 중에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여 수출용으로 닭을 사육(3만수이상)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 할 경우</p> <p>○ 후계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중 60%(사업비의 30%)이내인 자금</p> <p>○ 축사, 고정식온실.하우스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(중고 농기계 포함) 구입가능 - 이 경우 지방법원(등기소) 등의 등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(확인인) 의무화</p> <p>○ 표고버섯(노지재배에 한함), 밥, 송이버섯, 산나물, 산약초, 장뇌, 조경수, 분재,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,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</p> <p>○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,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-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(예 : 선인장 재배 등)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(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)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가능</p>	<p>○ 문구수정</p> <p>○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업화, 규모화를 위해 시설설치자금 지원 필요</p> <p>○ 중장기 농업인력육성 세부과제 제출안 반영</p> <p>○ 기존의 영농시설물 이용을 제고 및 한정된 지원자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기존 영농시설물 및 중고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완화</p> <p>○ 임산물 생산 및 내수면 어업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, - 지원대상품목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의 질의가 빈발하여 명문화</p> <p>○ 재배품목이 희소하여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선인장 재배 등 특수작목 재배농가에서의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해소</p>

	현 행(2001)	변경안(2002)	변경사유
52.농공단지 육성사업 가.사업내용 (2)지원대상 <행정사항> 사후관리	○ 공영개발 농공단지 (신설)	○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 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 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○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 계, 관련업종유치,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	○ 농공단지통합지침개정내용 반 영 ○ 농공단지 경쟁력제고
54.농축산경영자금 1.목적 ② 전문농업경영 자금 ○ 지원조건	○ 농업경영자금 (신설) (신설)	○ 농축산경영자금 ○ 재해농·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○ 1년이내, 연리 5.0%. 단, 인삼 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금 별로 5년이내까지 ※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 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 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·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1,500만원이내에서 지원 ※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 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	○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 금 통합 ○ 재해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지 원목적 신설 ○ 인삼식재자금 지원내용 신설
가.일반축산경영자금 ○ 지원대상자	○ 부업규모 축산농가	○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농업종 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·전업 축 산농가	○ 농업종합자금지원관련 지원대 상자 확대
다.재해대책경영자금 ○ 지원대상자	○ 축산농가중 재해를 입은 농가	○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 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○ 법령에 의한 재해 : 1~2년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-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: 1년이 내(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 능), 연리 5.0% <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>	○ 농업경영자금을 일반재해대책 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
○ 지원조건	○ 법령에 의한 재해 -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 연재해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 해로 판정된 경우 ※ 중앙지원(국고+융자)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		



<p>○ 지원금액</p>	<p>당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- 시장.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법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※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축사의 붕괴, 가축의 도난.폐사 등 ※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</p>	<p>○ 지원대상 : 시장.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- 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붕괴, 가축의 도난, 폐사 등 -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- 피해율이 30%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-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(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)</p>	
	<p>○ 호당 300만원~1억원 이내 ※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- 호당 지원액 · 법령에 의한 재해 : 정부(지방자치단체 포함)지원액(보조+융자)과 피해액과의 차액 범위내 ·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: 보험금.공제금 및 정부지원액(살처분보상비 등)을 제외한 피해액의 50% 범위내</p>	<p>○ 호당 100만원~5천만원 이내 -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- 호당 지원금액 : 연간경영비의 50%범위내 지원</p>	
<p>9.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○ 대출제한대상</p>	<p>○ 중앙회 임직원,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(신설)</p>	<p>○ 농협중앙회 및 농.축협 상근임직원(조합장, 계약직 직원포함) ○ 자금을 농업법인.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.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개인의 경영자금 ○ 농업종합자금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</p>	<p>○ 농업경영자금에 일반재해대책 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○ 지원제한대상 확대 ○ 자금중복지원 제한</p>